

#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연구비 규정

- 제1조 (명칭) 본 연구비의 명칭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(이하 KSPEN) 연구비라고 칭한다.
- 제2조 (목적) KSPEN 회원의 임상영양 관련 분야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창의적인 연구 의욕을 고취하여 , 학회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-1 (자격) KSPEN 정회원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3조-2 (자격) 연구책임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KSPEN 정회원 (평생회원 포함)이어야 한다.
- 제3조-3 (자격) 이미 선정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인 연구자는 또 다른 연구과제의 신청을 할 수 없다.
- 제4조 (재원) 연구비는 KSPEN 기금으로 운영하며, 연구비 규모 및 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제5조 (신청) 연구책임자는 KSPEN 연구비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'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신청서'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 (심사) 연구 과제의 심사는 연구위원회에서 실시하며,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제7조 (기간) 연구 기간은 연구비 선정부터 연구 종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, 1년을 원칙으로 하며,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제8조-1 (지급)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연구책임자에게 50%를 선지급(1차 지급)하고, 진행 상황에 따라 나머지 50%를 지급(2차 지급)한다.
- 제8조-2 (지급) 2차 지급의 시점은 연구의 완료, 연구내용의 발표 및 학회지 게재 등의 연구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.
- 제8조-3 (지급) 연구비 지급의 경로는 산학협력단을 통하거나 개인별 연구책임자를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. 단, 직접지급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으로 일정 세율로 지급된다.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산학협력단을 통할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- 제9조-1 (의무)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KSPEN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하며, 연구 기간이 종료되고 1년 이내에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(Annals of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; ACNM)에 게재하여야 한다.
- 제9조-2 (의무) 연구결과 발표 시 KSPEN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반드시 명시하여야

한다.

- 제9조-3 (의무)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물을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(ACNM)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10조 (종료)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료 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내역서와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
- 제11조-1 (철회) 최초 연구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철회를 요청한 연구과제에 한하여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철회를 승인할 수 있다.
- 제11조-2 (철회) 철회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미사용 연구비 전액과 이미 사용된 연구비의 1/2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11조-3 (철회) 연구비 반환이 결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KSPEN 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.
- 제12조 (효력) 본 연구비 규정의 효력은 2023년 1차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.